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7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김장겸 · 박준태 · 박성민  
서천호 · 조지연 · 김소희  
서일준 · 박덕흠 · 김용태  
김재섭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 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 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좌”를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계좌”를 각각 “계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계좌”를 각각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계좌 또는 계정”을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계정”으로 한다.

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타. (생략)</p> <p>&lt;신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파. ~ 거. (생략)</p> <p>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정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p>	<p>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파. 「<u>전자금융거래법</u>」에 따른 <u>선불업자</u></p> <p style="padding-left: 20px;">하. ~ 너. (현행 파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p> <p>2.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lt;단서 삭제&gt;</p>

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  
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2의2·3. (생략)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  
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  
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  
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3. (현행과 같음)

4. -----  
-----  
-----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  
-----  
-----  
-----  
-----  
-----  
-----  
-----  
-----.

가. -----  
-----계좌 또는 선불전  
자지급수단

나. -----  
-----계좌 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계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현행과 같음)

라. -----계  
좌, 선불전자지급수단-----

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5. -----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계정-----  
-----  
-----  
-----  
-----  
-----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② (생략)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